



#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5년 5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

1. 사회복지과-2508(2015.1.20)호 및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6088(2015.4.1)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2015년 5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복지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대상 : 강남장애인복지관의 4개소

나. 교부금액 : 금515,051,470원(금오억일천오백오만일천사백칠십원)

다. 재원비율 : 시비90%, 구비10%

복지관명	2015년 예산액	기 교부액	5월 교부액			잔액
			계	시비	구비	
총계	7,913,460,000	2,829,057,430	515,051,470	463,546,320	51,505,150	4,569,351,100
강남장애인복지관	1,267,560,000	454,487,000	77,395,000	69,655,500	7,739,500	735,678,000
성모자애복지관	1,705,445,000	614,228,000	117,491,000	105,741,900	11,749,100	973,726,000
청음회관	1,549,445,000	543,768,130	96,803,650	87,123,290	9,680,360	908,873,220
충현복지관	1,796,075,000	650,381,000	125,809,000	113,228,100	12,580,900	1,019,885,000
하상장애인복지관	1,594,935,000	566,193,300	97,552,820	87,797,530	9,755,290	931,188,880

라.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

마. 교부방법 : 장애인복지관 교부신청에 의해 계좌 입금조치

※ 사통망(행복 e-음)을 연계하여 e-호조로 지급

바. 정산방법 : 매월 사업 종료후 매분기후 집행예산 정산

사. 교부조건 : 2015년 보조금은 반드시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편성하며 인건비 전용은 불가, 인건비 잔액발생 시 정산 후 반납.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집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붙임 1. 2015년 5월 보조금 교부 신청서 5부.  
 2. 2015년 5월 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 5부.  
 3. 2015년 5월 보조금 교부 청구서 5부.  
 4. 2015년 2/4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통보(서울시 공문).  
 5. 2015년 2/4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내역(법인.구립시설).  
 6. 2015년 5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급조서  
 7. 2015년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 1부 끝.

주무관 **김선아** 장애인복지팀장 代**김선아** 사회복지과장 **박선옥**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부구청장 직무대전결 05/14  
 리 **주윤중**

협조자 주무관 **김선아** 주무관 **김정숙** 지출팀장 **김애영**

재무과장 **김병희** 행정국장 **이창훈**

시행 사회복지과-18789 ( ) 접수 ( )

우 135-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http://www.gangnam.go.kr)

전화 02-3423-5873 /전송 02-3423-8837 / [askky@gangnam.go.kr](mailto:askky@gangnam.go.kr) / 부분공개(6)